

의안번호	2209411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 5. 8.
추 계 번호	25B193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4,000만원(연평균 2,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2조의2)	농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70	—	—	—	—	70	14
	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70	—	—	—	—	70	14
추가재정소요		140	—	—	—	—	140	28

주: 1.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용역 수행 방식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2.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2호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지진, 해일, 태풍, 강풍,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유해 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함), 그 밖에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업재해의 정의에 ‘지진, 이상고온(異常高溫)’을 포함	의무규정
2	안 제2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3조 (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1)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제1항)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4	제3조의2(재해 발생 긴급 실태 조사)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4조(보조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복구 및 지원 금액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복구비 및 지원금 또는 「농어업 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여야 함(제1항)</u> ※ 차액 지원 비교 대상 법률 추가, 차액 지원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름(제2항)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등 <u>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u> ※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름(제3항)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u>다.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또는 일부 <신설></u>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함. <u>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정하여야 함 <제7항 후단 신설></u>	의무규정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는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8항 신설></u>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5조(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각각 둠(제1항) 1.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3.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4.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의무규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제8항 신설>	재량규정
7	안 제7조제3항 (응급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²⁾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주민을 포함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응급조치에 종사한 주민에게도 정당한 보상	의무규정
8	안 제8조제3항 (응급대책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³⁾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제1항에 따른 지원 요구를 받아 지원한 자를 포함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물자의 응급수송 등에 종사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	의무규정
9	안 제9조의2 (통계의 수집·관리 등)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 1. 재해별 피해 원인 및 피해 발생 지역, 피해 규모에 관한 자료 2. 재해별 보상 규모 및 복구에 관한 자료 3.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보험목적물 피해에 관한 자료 4. 친환경 농작물의 병충해 피해에 관한 자료 5. 상습침수구역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재해대책 제도 및 보조·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0	안 제9조의3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제2호 (정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정의에 지진 및 이상고온(異常高溫)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진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업재해의 복구비 지원 등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지진 또는 이상고온으로 재해피해를 입게 될 농어가 수 및 그 유형,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은 현시점에서 예측이 불가하여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응급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가옥·시설·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2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	- 유사사례 참고(제1항) -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비용
		-	- 미대상(제3항)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수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3조 (재해대책)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 미대상 - 개정안은 5년마다 발표 중인 「기후영향평가등 보고서」를 농어업재해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정보 제공시스템” 등에서 기후영향평가 등 보고서 제공 중
4	안 제3조 (재해대책) 제1항 각 호 및 제2항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어업재해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 농·산림작물 재입식(다시 심는 경우) 관련 비용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지원,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지원,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친환경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 농어업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및 어가에 대한 피해 보상, 실거래가 수준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재해복구 및 지원조치를 받은 농어가의 지원금이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향후 재해피해를 입게 될 농어가 수 및 그 유형, 농·어가별 차액 발생 여부, 생산비 등을 포함한 지원금, 농어업재해보험 미가입 농어가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은 현시점에서 예측이 불가하여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집행액: ('06) 2,460억원 → ('08) 251억원 → ('10) 665억원 → ('12) 1,973억원 → ('14) 144억원 → ('15) 91억원 → ('18) 1,234억원 → ('19) 689억원 → ('20) 1,336억원 → ('21) 1,456억원 → ('22) 650억원 → ('23) 1,700억원 → ('24) 2,663억원																			
5	안 제3조의2 (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어업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국립수산물과학원 등을 통해 재해발생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한 긴급 실태조사의 경우 향후 농어업재해 발생 여부, 그 중 긴급 실태조사가 필요한 농어업재해 상황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고, 개정안은 긴급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6	안 제5조(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	• 미대상 －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해양수산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각 부처의 기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8항), 분과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운영경비는 이미 편성된 각 부처의 경비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회) <table><tr><th rowspan="2">위원회 (소관부처)</th><th colspan="4">회의개최 횟수</th></tr><tr><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td><td>7</td><td>5</td><td>4</td><td>7</td></tr><tr><td>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td><td>3</td><td>4</td><td>3</td><td>3</td></tr></table>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 해양수산부, 행정기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위원회 (소관부처)	회의개최 횟수				2021	2022	2023	2024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7	5	4	7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	3	4	3	3
위원회 (소관부처)	회의개최 횟수																					
	2021	2022	2023	2024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7	5	4	7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	3	4	3	3																		
7	안 제7조제3항 (응급조치)	－	• 미대상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응급조치 또는 응급대책 지원에 종사한 지역주민, 해당지역 토지등의 수용·사용, 재해대책 필요물자 응급수송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8조제3항 (응급대책의 지원)		* 현행법 시행령 제13조 ⁴⁾ 는 응급조치 또는 응급대책 지원 보상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재해대책 명령서(시행령 제12조)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들이 명시적으로 포함됨을 규정하는 것임
9	안 제9조의2 (통계의 수집·관리 등)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고(제1항), 재해대책 제도 및 보조·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며(제3항), 해당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제4항) 조사연구 및 업무위탁경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시점에서 조사·연구 범위, 관련 기술 개발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시책의 구체적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0	안 제9조의3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신설	–	• 미대상 – 재해피해농어가에 대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 통지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①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일정 예산을 편성·집행중

※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대책 사업 개요 참고

[표 2] 농어업재해대책 개요

	농업재해대책	어업재해대책
정의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목적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태풍, 이상기후 등) 발생으로 양식생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복구지원을 통해 신속한 어가경영회복
지원 근거	법 제4조(보조 및 지원)	
지원내용	- 직접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 지원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복구비 등 - 간접 지원: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피해율 50% 이상)에 대하여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지원 - 공공시설 복구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국가관리(국비 100%), 지방관리(국 50%, 지방 50%), 농어촌공사 관리(국	- 직접 지원 - 어선·어망·어구(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 증·양식시설복구비, 수산생물 등의 입식, 생계지원비 - 간접 지원 - 영여자금 상환연기, 재해대책 특별융자

	농업재해대책	어업재해대책
	70%, 지방 30%) •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및 신규자금 지원 – 농가피해율에 따라 기 대출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 원활한 영농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 융자 추가 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단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93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90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래 시점의 농어업재해 발생 여부 및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예측이 곤란하여 해마다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⁵⁾

[표 3] 농어업재해대책비 예결산 현황: 2019~2025년

(단위: 백만원)

연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사업명	재해대책비 (1033-302)	재해대책비 (융자) ¹⁾ (1033-304)	양식등 재해대책비 (3443-302)	수산업융자금 이자보전 ²⁾ (3450-301)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 자금 (3465-303)
2019	예산	557,64	28,500	10,000	4,483	23,000
	결산	68,860	6,187	10,842	4,394	22,997
2020	예산	60,188	8,500	7,500	2,299	20,000
	결산	133,634	851	8,286	1,929	20,000
2021	예산	100,000	28,500	8,000	1,364	20,000
	결산	145,604	1,252	6,150	922	20,000
2022	예산	150,000	8,500	8,000	1,359	20,000
	결산	65,039	5,893	7,973	1,483	6,345
2023	예산	200,000	—	8,000	1,768	20,000
	결산	170,023	—	16,909	1,439	20,000
2024	예산	280,000	—	50,000	3,301	100,000
	결산	266,323	—	19,266	991	18,999
2025	예산	160,000	—	25,000	2,785	80,000

주: 1) 2023년부터 재해대책비(융자)에서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사업으로 전환

주: 2) 해당 세부사업의 '재해복구자금' 내역사업 금액에 해당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각 연도)

5) 예산이 부족한 경우 예비비 활용 또는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

- 또한, 농어업재해대책 복구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해오고 있음

※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농어업재해대책 복구비 단가인상 세부내역

[참고자료 3] 농어업재해대책비 집행 현황: 2020~2024년 참고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각 7,000만원으로 가정

- 유사사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6)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비용

[표 4]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계획명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2023.1.)	제1차('23~'2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2023.6.)
용역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용역수행기간	2022. 5. 3. ~ 11. 26.	2022. 7. 7. ~ 2023. 1. 31.
용역비	45.5백만원	7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4,000만원(연평균 2,800만원)으로 추계됨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표 5]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농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70	—	—	—	—	70	14
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70	—	—	—	—	70	14
합계	140	—	—	—	—	140	28

주: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용역 수행 방식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대책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농업재해대책

□ 목적

-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

□ 지원 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지원 내용

- **(직접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를 지원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복구비 등

< 주요 항목 복구비 부담률 >

(단위: %)

항목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농약대	70	30	-	-
대파대	35	15	30	20
가축입식	35	15	30	20
농림시설	24.5	10.5	55	10

- **(간접 지원)**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피해율 50% 이상)에 대하여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지원
- **(공공시설 복구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국가관리(국비100%), 지방관리(국50, 지방50), 농어촌공사 관리(국70, 지방30)
-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및 신규자금 지원
 - 농가피해율에 따라 기 대출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 * 피해율 30~49% 농가는 1년, 50% 이상 농가는 2년 지원
 - 원활한 영농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 용자 추가 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 * 고정금리 1.8%(또는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

2. 어업재해대책

□ 목적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태풍, 이상기후 등) 발생으로 양식생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복구지원을 통해 신속한 어가경영회복

□ 지원 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지원항목

구분	지원항목	지원비율 (%)	지원조건 및 지원액
직접 지원	어선·어망·어구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	보조 35, 융자 55	지원액 = 기준단가 × 톤수
		융자 70 (40톤이상 어선)	지원액 = 건조지원 기준 지수
	증·양식시설복구비	보조 35, 융자 55	지원액 = 기준단가 x 피해시설량
	수산생물 등의 입식	보조 50, 융자 30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수량
	생계지원비	보조 100	1인가구 730,500원~6인가구 2,485,400원, 7인이상 1명 증가시 289,700원 추가 피해단위 피해율 50%
간접 지원	영여자금 상환연기	1년	어가단위 피해율 30~50%
		2년	어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재해대책 특별융자	융자 100	해수부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 (지원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참고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농어업재해대책 복구비 단가인상 세부내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업재해대책

○ 연도별 단가 인상·신설 항목

연 도	전 체 항목수	항 목 수		
		계	인 상	신 설
합 계	214	383	352	31
2024	214	124	(123) 농경지 2, 비닐하우스 33, 대파대 27, 농약대 4, 가축입식 19, 축산 시설 19 등	(1) 비닐하우스(버섯) 1
2023	191	26	(26) 시설 8, 대파대 13, 농약대 1, 가축 4	-
2022	191	87	(64) 비닐하우스 16, 대파대 13, 농약대 1, 가축입식 18 등	(23) 비닐하우스 12, 농약 2, 대파대 1, 가축입식 3, 곤충 5
2020	175	125	(123) 농경지 2, 비닐하우스 20, 대파대 25, 농약대 5 등	(2) 인삼3~4/5~6년근
2019	173	21	(16) 농경지 2, 조지 3, 과수재배시설 4, 곤충 1, 대파대 6	(5) 대파대 3, 곤충 2

○ 주요 농작물 단가 인상내역(발체)

구 분		'19년단가	'20년단가	'22년단가	'23년단가	'24년단가
농경지 (만원/ha)	농경지 유실	3,593	5,136	5,136	5,316	5,701
	농경지 매몰	1,160	1,658	2,271	2,271	3,067
농약대 (만원/ha)	일반작물(벼 등)	59	74	74	74	79
	과수류	199	249	249	249	276
	약용류	107	157	157	157	160
	화훼류	712	890	1,268	1,572	1,886
대파대 (만원/ha)	채소(과채류)	707	884	884	884	1,384
	채소(상추)	469	586	586	586	813
	채소(멜론)	707	884	884	884	1,111
	채소(참외)	707	884	884	884	944
	채소(호박)	707	884	884	884	1,058
	채소(딸기)	1,811	2,264	2,264	2,264	3,541
	채소(쪽파)	457	571	571	571	913
	채소(토마토)	1,472	1,840	1,840	1,840	2,272
	채소(파프리카)	3,303	4,088	4,088	4,088	4,553
	인삼(3~4년근)	-	2,169	2,169	2,169	2,706
	복숭아	218	218	306	306	383
	포도	220	344	496	596	767
가 축 입식비 (원/마리)	한우(송아지)	1,400,500	1,400,500	1,529,500	1,728,810	1,878,500
	돼지(육성돈)	139,000	211,500	211,500	211,500	255,209
	육계(병아리)	427	427	427	427	659
	오리(중추)	2,564	3,206	3,206	3,206	5,749
시 설 복구비 (원/m ²)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3,330	3,330	4,054	5,578	6,973
	내재해형-07-단동-1	-	-	6,229	6,229	8,521
	인삼재배시설(A형,연목)	2,910	2,910	2,910	2,910	3,621
	과수재배시설(방조망)	1,600	1,958	2,228	2,673	3,119

□ 어업재해대책

○ 연도별 단가 인상·신설 항목

연 도	전 체 항목수	항 목 수		
		계	인 상	신 설
합 계	290	89	76	13
2024	290	8	(3) (입식비) 어류 3	(5) (입식비) 어류 5
2023	285	4	(1) (입식비) 새우1	(3) (중양식시설) 패류1 / (입식비)패류1, 해조류1
2022	282	5	(1) (입식비) 어류1	(4) (염전시설) 4
2021	278	—	—	—
2020	278	72	(71) 입식비 36종, 수산중양식시설 3 종, 어구·어망 30종, 선박 2종	(1) (입식비) 미더덕

○ 주요 수산양식물 단가 인상내역(발체)

구 분		규격	'20년단가	'21년단가	'22년단가	'23년단가	'24년단가
수산물 증식·양식시 설(원)	개체굴(연승채롱식) —100m당	줄	—	—	—	1,806,065	1,806,065
	조피볼락(큰고기)	마리	1,880	1,880	1,880	1,880	2,045
수산생물 등의 입식 (원)	감성돔(큰고기)		3,596	3,596	3,596	3,596	3,684
	뱀장어(큰고기)		11,896	11,896	11,896	11,896	13,398
	넙치(큰고기)	ha	2,962	2,962	3,000	3,000	3,000
	새우(체장 2cm 내외, 200 천미)—축제식		1,225,000	1,225,000	1,225,000	1,680,000	1,680,000

[참고자료 3] 농어업재해대책비 집행 현황: 2020~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대설·한파 (1.22.~24.)	제주지역 대설·한파로 월동채소 언피해,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707호	■ 농작물 732.9ha * 월동무 714.1, 브로콜리 3.8, 배추 2.7, 양배추 2.6 등 ■ 가축폐사 말 6마리, 꿀벌 5,158군 ■ 농업시설 0.03ha(축사)	■ 3,246백만원 - 보조 2,390(국비 1,673) - 융자 521 - 자부담 335
호우 (2.18.~20.)	전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맥류, 채소류 침수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169호	■ 농작물 2,147.3ha * 보리 1,170.6, 귀리 459.9, 밀 203.9, 양파 103.6 등	■ 2,001백만원 - 보조 1,986(국비 1,390) - 융자 9 - 자부담 6
대설 (2.20.~22.)	강원지역 대설로 비닐하우스, 인 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파손 피 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10호	■ 농업시설 9.6ha * 인삼시설 5.9, 비닐하우스 2.9, 과수시설 0.5 등	■ 1,108백만원 - 보조 388(국비 272) - 융자 610 - 자부담 110 * 정책자금 상환연기: 120
일조량 부족 (‘23.12월~ ‘24.2월)	겨울철 잦은 강우 등 흐린 날씨 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12개 시·도(경북, 경남, 전남, 충남, 전 북, 제주, 광주, 충북, 대구, 대 전, 부산, 세종)에서 농작물 생육 불량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0,022호	■ 농작물 9,606.2ha * 딸기 2,521.3, 참외 1,990.8, 수박 852.8, 방울토마토 549.7, 토마토 530.7, 고추 438.3, 애호박 352.3 등	■ 30,182백만원 - 보조 29,080(국비 20,356) - 융자 661 - 자부담 441 * 정책자금 상환연기: 147,398
매실 냉해 (2~3월)	전북, 전남, 경남지역에 매실 꽃 개화기(2~3월) 이상저온으로 매 실 꽃 기관 형성 불량 및 고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420호	■ 농작물 1,498.1ha * 매실 1,498.1	■ 4,579백만원 - 보조 4,579(국비 3,205) * 정책자금 상환연기: 1,211
마늘 이차생장 및 양파 생육불량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 구 지역 겨울철 고온,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마늘 인편분화, 양파 추대·분구 등 피 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5,714호	■ 농작물 8,165.4ha * 마늘 3,035.9, 양파 5,129.5	■ 22,679백만원 - 보조 22,679(국비 15,875) * 정책자금 상환연기: 3,636
호우·강풍 (5.4.~6.)	전남, 제주지역 집중호우와 강풍 으로 맥류 등 농작물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512호	■ 농작물 4,241.8ha * 보리 1,664.9, 귀리 925.3, 밀 630.0, 단호박 81.8, 양파 31.0, 감자 13.0 등 ■ 농경지 0.11ha ■ 농업시설 0.02ha(축사)	■ 4,571백만원 - 보조 4,158(국비 2,911) - 융자 250 - 자부담 163 * 정책자금 상환연기: 1,563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우박·강풍 (5.15.~16.)	전북, 전남지역 우박과 강풍으로 과수 열매 타박, 가지 꺾임, 채소 류 잎 파열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457호	■ 농작물 310.0ha * 사과 110.6, 참다래 79.9, 고 추 46.0, 배 18.6, 복숭아 13.0, 단호박 10.3, 단감 4.8 등	■ 853백만원 - 보조 846(국비 592) - 용자 6 - 자부담 1 * 정책자금 상환연기: 682
호우 (7.8.~19.)	13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대 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수리시설 파손 등 피해 발 생 * 피해 농가수: 36,384호	■ 농작물 9,449.6ha * 콩 2,051.5, 벼 808.5, 상추 623.1, 복숭아 581.4, 인삼 566.5, 수박 550.3, 고추 488.7, 참외 458.0, 포도 318.0, 들깨 294.1, 방울토마 토 212.1, 참깨 192.8, 옥수수 167.3, 멜론 163.5 등 ■ 농업시설 63.2ha * 비닐하우스 26.5, 양액시설 24.9, 과수시설 4.2, 인삼시설 5.9 축산시설 0.9 등 ■ 가축폐사 1,022천마리*, 꿀벌 11천군, * 닭 992.5천마리, 소 126마리, 돼지 587마리 등 ■ 농경지 890.6ha ■ 공공시설 97개소	<중대본 심의(우리부 지원)> ■ 137,835백만원 - 보조 92,946(국비 55,706) ·보조(사유)58,561(국비 39,169) ·보조(공공)34,385(국비 16,537) - 용자 33,249 - 자부담 11,640 * 정책자금 상환연기: 91,668
호우 (6.19.~30.)	제주지역에 6월 지속된 호우로 메밀의 수발아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6호	· 농작물: 195.5ha * 메밀 수발아 피해(대파대 지원)	■ 756백만원 - 보조 378(국비 265) - 용자 227 - 자부담 151
호우 (7.21)	전남 영암지역에 국지성 호우로 무화과 등 농작물 침수 피해 발 생 * 피해 농가수: 133호	· 농작물: 60.1ha * 무화과 58.8, 포도 0.6, 방울토 마토 0.7	■ 200백만원 - 보조 198(국비 139) - 용자 1 - 자부담 1
폭염 인삼피해 (7~8월)	8개 시도(경기, 강원, 충북,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에 폭 염으로 인한 인삼 잎마름 및 고 사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891호	· 농작물: 2,955ha * 인삼 잎마름, 고사	■ 11,684백만원 - 보조 11,643(국비 8,150) - 용자 25 - 자부담 16 * 정책자금 상환연기: 59,022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 (7~9월)	11개 시도(경기, 강원, 충북,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광 주, 울산, 대전)에서 9월까지 이 어진 이상고온으로 벼멸구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7,632호	· 농작물: 17,732ha * 벼멸구 병충해 피해	■ 18,603백만원 - 보조 18,256(국비 12,779) - 용자 208 - 자부담 139 * 정책자금 상환연기: 39,229
호우 (9.19.~21.)	11개 시도(부산, 대전, 세종, 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 남, 경북, 경남)에 호우로 인한 농작물, 가축폐사, 공공시설 피 해발생 * 피해 농가수: 26,836호	■ 농작물 27,900ha * 벼 24,472.1, 배추 563, 배 435.1, 콩 278, 무 250.7, 상 추 226.6, 딸기 198.3, 방울토 마토 99.9, 기타 1,376.8 ■ 농업시설 11.9ha * 과수시설 8.1, 양액시설 2.8,	<중대본 심의(우리부 지원)> ■ 41,958백만원 - 보조 35,985(국비 19,943) ·보조(사유)32,140(국비 17,966) ·보조(공공)3,845(국비 1,976) - 용자 4,055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비닐하우스 0.8, 인삼시설 0.1, 축사 0.1 ■가축폐사 419천마리*, 꿀벌 2천군 * 육계 296.4천마리, 소 7, 산란계 52.5, 오리 69.6 등 ■농경지 62ha ■공공시설 13개소	- 자부담 1,918 * 정책자금 상환연기 91,668
폭염 (8~9월)	전북 고창, 제주지역에 폭염으로 인한 단호박 작과불량 및 레드향 열과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922호	■농작물: 522.1ha * 레드향 444.0, 단호박 78.1	■ 2,329백만원 - 보조 2,329(국비 1,630) * 정책자금 상환연기: 728
대설·강풍 (11.26~28)	8개 시도(경기, 충북, 강원, 충남, 전북, 인천, 경남, 서울)에서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 파손,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5,218호	■농작물 475.8ha * 화훼 67.8, 포도 55.8, 블루베리 53.2, 인삼 45.1, 사과 36.2, 콩 29.0, 오이 19.8, 배 18.8, 토마토 16.6, 복숭아 11.8, 배추 10.2 등 ■농업시설 2,525.3ha * 인삼시설 1,129.9, 비닐하우스 773.0, 과수시설 481.7, 축사 113.2 등 ■가축폐사 1,010천마리*, 꿀벌 5천군 * 육계 613천, 산란계 137천, 종계 49천, 돼지 1,906, 소 382, 오리 200, 염소 77 등	<중대본 심의(우리부 지원)> ■ 329,068백만원 - 보조 103,338(국비 70,285) - 융자 189,957 - 자부담 35,773 * 정책자금 상환연기: 246,879
합 계		■농작물 85,991.8ha ■농업시설 2,610.1ha ■가축폐사 2,451천마리, 꿀벌 23천군 ■농경지 952.7ha ■공공시설 110개소 * 피해 농가수: 146,233호	<합계: 611,652백만원> - 보조(사유): 292,949(국비 196,657) - 보조(공공): 38,230(국비 18,513) - 융자: 229,779 / 자부담: 50,694 * 정책자금 상환연기: 683,804

○ 2023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한파 (1.24.~28.)	제주지역 한파로 월동채소 등 인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055호	■ 농작물 4,704ha * 월동무 3,510, 양배추 291, 브로콜리 270, 콜라비 122, 등 ■ 가축폐사 1,501마리*, 꿀벌 5,129군 * 닭 1,500마리, 말 1마리	■ 13,552백만원 - 보조 12,287(국비 8,601) - 용자 759 - 자부담 506 * 정책자금 상환연기: 3,813
대설 (2.9.~10.)	경남지역 대설로 비닐하우스·과 수시설 파손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1호	■ 농업시설 30ha * 비닐하우스 1, 인삼시설 1.2, 과수시설 28 등 ■ 농작물 5.4ha * 복숭아 2.5, 블루베리 2.3, 체리 0.3, 딸기 0.2 등	■ 822백만원 - 보조 307(국비 215) - 용자 428 - 자부담 87 * 정책자금 상환연기: 62
이상저온 (3~4월)	4월 냉해로 14개 시·도(경북, 전 남, 충북, 전북, 충남, 경남, 경 기, 강원, 세종, 울산, 대구, 대 전, 광주, 부산) 139개 시·군·구 과수 꽃눈 고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76,652호	■ 농작물 44,765ha * 과수 37,864ha, 채소류 4,910, 수신품 1,991 등	<중대본 심의(우리부 지원)> ■ 120,810백만원 - 보조 120,682(국비 75,644) - 용자 77 / 자부담 51 * 정책자금 상환연기 12,688
호우·강풍 (5.4~6. 및 5.28~30)	호우·강풍으로 5개 시·도(충남, 전북, 전남, 광주, 제주)에서 농 작물 침수, 도복, 앞줄기 꺾임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8,119호	■ 농작물 8,057ha * 맥류 5,238, 전작 1,884, 채소 637, 과수 93 등 ■ 꿀벌 7군 ■ 농경지 0.9ha	■ 10,552백만원 - 보조 9,088(국비 6,317) - 용자 881 - 자부담 583 * 정책자금 상환연기 3,882
우박·강풍 (6.8~15)	7개 도(경북, 충북, 강원, 전북, 경남, 경기, 전남)에서 우박·호 우·강풍으로 사과 흠집, 잎 파열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9,460호	■ 농작물 5,150ha * 과수 3,7812, 전작 242., 채소 698, 특작·화훼 196 등 ■ 농업시설 1.5ha * 비닐하우스 0.2, 인삼시설 1.2, 축산 0.1 등 ■ 농경지 0.3ha	■ 16,897백만원 - 보조 15,515(국비 10,480) - 용자 856 - 자부담 526 * 정책자금 상환연기 13,896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호우(6.27~7.27) 및 태풍 카눈	16개 시·도에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가축 폐사, 비닐하우스, 수리시설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7,078호	■ 농작물 71,416ha * 벼 37,317, 콩 14,661, 채소류 7,752, 과수 4,501 등 ■ 농업시설 269ha * 비닐하우스 92, 양액시설 72, 과수시설 68, 인삼시설 31, 축산시설 5 등 ■ 가축폐사 913천마리*, 꿀벌 13천군, 기타 곤충 43천kg * 닭 852,808마리, 소 826, 돼지 3,867 등 ■ 농경지 1,490ha ■ 공공시설 689개소	<중대본 심의> ■ 341,972백만원 - 보조(사유) 138,460(국비 90,378) <우리부 지원> - 보조(위로금) 73,947(국비 49,887) - 보조(공공) 107,664(국비 55,747*) * '23년 6,860 교부, '24년 48,887 교부 - 융자 14,374, 자부담 7,527 * 정책자금 상환연기 129,110
호우 (9.15~17, 9.20~21) 및 우박 (10.14, 26)	7개 도(경남, 충남, 제주, 전남, 경북, 충북, 강원)에서 호우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흠집, 벼 도복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2,986호	■ 농작물 6,697ha * 단감 2,404, 사과 2,218, 벼 1,187, 채소류 673 등 ■ 농업시설 0.1ha ■ 농경지 1.5ha	■ 17,940백만원 - 보조 17,170(국비 12,019) - 융자 469 - 자부담 301 * 정책자금 상환연기 3,190
우박 (11.17)	제주에 우박이 내려 감귤 낙과·흠집, 쪽파 꺾임 피해 * 피해 농가수: 145호	■ 농작물 43.9ha * 감귤 42.4, 쪽파 1.5	■ 140백만원 - 보조 140(국비 98)
대설·한파 (12.20~22)	대설·한파로 인한 4개도(전남, 전북, 제주, 충남) 양파, 대파, 무 등 농작물 언피해 및 농업시설 파손 * 피해 농가수: 2,189호	■ 농작물 972.6ha * 양파 597.2, 대파 272.9, 무 70.2 등 ■ 농업시설 22.8ha * 비닐하우스 20.5, 축산시설 1.9, 과수시설 0.4	■ 6,820백만원 - 보조 4,135(국비 2,895) - 융자 2,231 - 자부담 454 * 정책자금 상환연기 9,801
합 계		■ 농작물 141,810.9ha ■ 농업시설 323.4ha ■ 가축폐사 914.5천마리, 꿀벌 18천군, 기타곤충 43천kg ■ 농경지 1,492.7ha ■ 공공시설 689개소 * 피해 농가수: 229,785호	<합계: 529,505백만원> · (중대본) : 138,460 - 보조(사유): 138,460(국비 90,378) · (농식품부) : 391,045 - 보조(사유): 253,271(국비 166,156) - 보조(공공): 107,664(국비 55,747) * '23년 6,860 교부, '24년 48,887 교부 - 융자 : 20,075 / 자부담 : 10,035 * 정책자금 상환연기: 176,442

○ 2022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호우·강풍 (3.25.~26.)	전남 보성(호우), 제주 제주·서귀포(강풍)으로 농작물 침수, 도복, 잎·줄기 꺾임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01호	■ 농작물 260ha * 보리 98.5, 밀 23.8, 옥수수 94.6, 단호박 42.6, 수박 0.2	■ 377백만원 - 보조 351(국비 246) - 용자 16 - 자부담 1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우박 (5.24.)	경북 6개(안동, 청송, 영양 등) 지역 우박으로 사과 흠집, 고추 잎 파열 등 노지작물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179호	■ 농작물 819ha * 과수 754, 채소 63, 전작 2, 특작 0.7 · 사과 722, 고추 42, 자두 16, 배추 13 등	■ 2,403백만원 - 보조 2,403(국비 1,682) * 영농자금 상환연기 5,207
우박 (6.24.~25.)	경북 봉화지역 우박으로 사과 흠집·낙과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18호	■ 농작물 163ha * 과수 160.4, 채소 2.6 · 사과 158.3, 블루베리 1.3 등	■ 457백만원 - 보조 457(국비 320) * 영농자금 상환연기 23
호우 (6.28.~7.1.)	경기·강원·충남 지역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물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413호	■ 농작물 918ha * 벼 476.8, 전작 307.3, 채소 78.5, 과수 19.8, 특작 31.8, 기타 3.8 ■ 농경지 32.7ha ■ 농업시설 0.5ha	■ 3,208백만원 - 보조 2,099(국비 1,469) - 용자 742 - 자부담 367 * 영농자금 상환연기 50
가뭄 (6~7월)	전남(무안·영광·진도·신안) 지역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고사, 시들음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692호	■ 농작물 1,442ha * 벼 1,429(영광 171, 진도 21, 신안 1,238), 콩 12(무안), 고구마 1(무안)	■ 1,318백만원 - 보조 1,231(국비 862) - 용자 52 - 자부담 35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태풍 ‘송다’ (7.30.~8.1.)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전남 순천, 보성 지역 농작물 낙과, 도복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66호	■ 농작물 123ha * 벼 19, 과수 100(배 97, 복숭아 2 등), 특작 4	■ 316백만원 - 보조 308(국비 216) - 용자 5 - 자부담 3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호우 (8.8.~17.)	중부지방 중심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물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0,175호	■ 농작물 4,219ha * 벼 1,327, 과수 817, 전작 306, 채소 1,278, 특작 428, 기타 63 ■ 농경지 410ha ■ 농업시설 22ha ■ 가축폐사 33,910마리, 꿀벌 3,366군 ■ 수리시설 57개소	<중대본 심의> ■ 49,546백만원 - 보조(사유) 21,287(국고 13,808)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12,065(국고6,463) - 용자 8,604, - 자부담 7,590 * 영농자금 상환연기 8,472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호우 (8.19.~20.)	충북 충주, 음성에 호우로 인해 농작물 침수·낙과, 농경지 유 실·매몰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585호	■ 농작물 76ha * 벼 4, 전작 3, 채소 2, 과수 57(복숭아 56 등), 특작 10 ■ 농경지 4ha ■ 농업시설 0.1ha	■ 419백만원 - 보조 333(국비 233) - 융자 62 - 자부담 24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제11호 태풍 (힌남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 로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도 복, 벼 흑·백수, 농경지 유실·매 몰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7,502호	■ 농작물 49,105ha * 벼 29,000, 과수 7,514, 전작 4,768, 채소 7,402, 특작 285, 기타 136 ■ 농경지 331ha ■ 농업시설 45ha ■ 가축폐사 12,793마리, 꿀벌 4,587군 ■ 수리시설 22개소	<중대본 심의> ■ 132,836백만원 - 보조(사유) 77,972(국고 41,395)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44,377(국고 30,350) - 융자 7,571, - 자부담 2,916 * 영농자금 상환연기 12,688
대설·한파·강풍 (12.21.~24.)	전라지역 중심 대설로 비닐하우 스, 축사 등 농업시설 위주로 피 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350호	■ 농작물 52.4ha * 과수 12, 채소 27, 특작 7 등 ■ 농업시설 105.4ha * 비닐하우스 67, 인삼시설 23, 축산시설 9, 과수시설 6 등 ■ 가축폐사 13,729마리, 꿀벌 3,893군	<중대본 심의> ■ 14,671백만원 - 보조(사유) 4,810(국고 2,790) <우리부 지원> - 융자 8,231 - 자부담 1,630
합 계		■ 농작물 57,177ha ■ 농업시설 173ha ■ 농경지 778ha ■ 가축폐사 60,432마리, 꿀벌 11,846군 ■ 수리시설 79개소 * 피해 농가수: 64,581호	<합계: 205,551백만원> · (중대본): 104,069 - 보조(사유): 104,069(국비 57,993) · (농식품부): 101,482 - 보조(사유): 7,182(국비 5,028) - 보조(공공): 56,442(국고 36,813) - 융자: 25,283 / 자부담: 12,575 * 영농자금 상환연기: 26,440

○ 2021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한파(1차) (1.8.~1.10.)	4개 시·도(광주·전북·전남·제주) 한파로 시설작물, 월동채소 등 연피해 발생 * 피해 증상이 바로 확인되는 배추, 무 등 월동채소 중심 * 피해 농가수: 6,813호	■ 농작물 8,886ha * 채소 8,116, 전작 553, 특작 125 등 ■ 가축 98마리, 꿀벌 363군 * 염소 90, 송아지 4, 말 4	■ 22,299백만원 - 보조 21,258(국비 14,869) - 융자 652 - 자부담 389 * 영농자금 상환연기 3,960
대설 (3.1.~3.2.)	강원지역 대설로 15개 시군 농업시설물, 농작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213호	■ 농업시설 114ha * 비닐하우스 57, 인삼시설 42, 과수시설 13 등 ■ 농작물 8ha ■ 꿀벌 493군, 염소1마리	■ 11,260백만원 - 보조 4,044(국비 2,831) - 융자 6,094 - 자부담 1,122 * 영농자금 상환연기 10
한파(2차) (1.8.~1.10.)	6개 시·도(광주·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 과수 갈변·고사, 밭작물 고사 등 연피해 발생 * 피해 증상이 4월 이후에 확인된 과수, 마늘·양파 등 밭작물 등 * 피해 농가수: 7,844호	■ 농작물 3,481ha * 과수 2,645, 채소 520, 특작 308, 기타 8	■ 12,218백만원 - 보조 11,936(국비 8,355) - 융자 169 - 자부담 113 * 영농자금 상환연기 8,761
이상저온 (4월)	9개 시·도(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과수 꽃눈 고사 등 * 피해 농가수: 42,933호	■ 농작물 27,716ha * 과수 26,057, 맥류 895, 전작 101, 채소 106, 특작 424, 기타 133	■ 78,050백만원 - 보조 77,867(국비 54,507) - 융자 110 - 자부담 73 * 영농자금 상환연기 24,003
마늘쫘 2차분화 (5월)	1월 하순~3월 고온과 4~5월 잦은비로 3개 시·도(충북, 충남, 경북) 한지형 마늘 벌마늘 피해 * 피해 농가수: 1,338호	■ 마늘 400ha(충북 63, 충남 229, 경북 108)	■ 1,175백만원 - 보조 1,175(국비 822)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집중호우 (7.5.~8.)	4개 시·도(충남·전북·전남·경남) 농작물 침수, 농업시설물 등 피해(전남 피해가 대부분) * 피해 농가수: 12,927호	■ 농작물 27,661ha ■ 농경지 111ha ■ 농업시설 11ha ■ 가축폐사 108천수, 꿀벌 806군 ■ 수리시설 146개소	<중대본 심의> ■ 30,943백만원 - 보조(사유) 26,275(국고 17,654)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1,809(국고1,245) - 융자 2,084, - 자부담 775 * 영농자금 상환연기 2,117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우박 (6.22, 7.10, 7.15, 7.17.)	6개 시도(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과실 흠집, 잎·줄기 파열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223호	■ 농작물 987ha * 과수 687, 전작 64, 채소 150, 특작 86	■ 2,953백만원 - 보조 2,746(국비 1,922) - 융자 124, - 자부담 83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폭염 (7~8월)	5개 시도(경기·충북·충남·대전·세종) 과수 일소피해, 인삼 잎마름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102호	■ 농작물 1,546ha * 과수 263, 전작 11, 채소 68, 특작 1,202, 기타 2 ■ 가축폐사 3천수(육계)	■ 6,103백만원 - 보조 5,898(국비 4,129) - 융자 123 - 자부담 82 * 영농자금 상환연기 85
우박 (8.18.)	전남(영암·함평) 지역 우박으로 벼 낱알 떨어짐, 노지작물 잎 손상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29호	■ 농작물 211ha * 벼 114.4, 과수 31.1(배 19.3, 단감 11.5, 블루베리 0.3), 전작 65.3(고구마 64.7, 콩 0.6)	■ 234백만원 - 보조 234(국비 164) * 영농자금 상환연기 280
태풍 ‘오마이스’ (8.21.~25.)	5개 시도(충남·전북·경북·경남·부산) 벼 흡수,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3,071호	■ 농작물 7,595ha * 벼 7,118, 과수 233, 전작 37, 채소 186, 특작 8, 기타 13) ■ 농경지 60ha ■ 농업시설 5ha ■ 팔벌 844군 ■ 수리시설 24개소	<중대본 심의> ■ 8,546백만원 - 보조(사유) 7,247(국고 3,980)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173(국고87) - 융자 791 - 자부담 335 * 영농자금 상환연기 98
집중호우 (8.31.~9.1.)	충남 지역 벼 침수, 고추·콩 등 노지작물 침수 피해 * 피해 농가수: 532호	■ 농작물 188ha * 벼 63, 전작 27, 채소 76, 과수 6, 특작 12, 기타 4 ■ 농경지 19ha ■ 농업시설 0.1ha ■ 팔벌 80군	■ 1,253백만원 - 보조 825(국비 578) - 융자 286 - 자부담 142 * 영농자금 상환연기 358
태풍 ‘찬투’ (9.14.~17.)	제주 지역 월동무, 양배추 등 노지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5,117호	■ 농작물 9,633ha * 전작 3,475, 채소 5,998, 특작 129, 과수 25, 밭벼 6 ■ 농경지 0.6ha	■ 21,092백만원 - 보조 18,983(국비 13,288) - 융자 1,267, - 자부담 842 * 영농자금 상환연기 359
우박·강풍 (9.22.)	전북(정읍, 부안), 전남(담양), 경북(안동) 지역 벼 도복·낱알 떨어짐, 과수 흠집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633호	■ 농작물 543ha * 벼 423, 과수 107, 전작 9, 채소 4	■ 671백만원 - 보조 666(국비 466) - 융자 3, - 자부담 2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벼 이삭도열병 (‘21.8~9월)	’21년 8~9월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 저온현상, 일조부족 등 기 상요인으로 전북지역 벼 병해 피해 * 피해 농가수: 20,067호	■ 벼 40,425ha	■ 33,140백만원 － 보조 33,140(국비 23,198) － 융자 0 - 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우박·강풍 (10.1.)	경기, 충북, 충남 지역 과수 낙 과 및 타박·파열, 벼 도복·탈립, 채소 잎·열매 파열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254호	■ 농작물 2,416ha * 벼 1,832, 과수 433, 채소 118, 전작 17, 특작 15, 기 타 1 ■ 농업시설 6.5ha	■ 3,665백만원 － 보조 3,346(국비 2,342) － 융자 225 － 자부담 94 * 영농자금 상환연기 921
한파 (10.16.~18.)	전북 진안지역 배추 결구불량, 무게 감소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333호	■ 농작물(배추) 90.3ha	■ 250백만원 － 보조 250(국비 175) － 융자 0, - 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우박 (11.10.)	전남 영광지역 대파 잎이 부러 지거나 상처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59호	■ 농작물(대파) 291.8ha	■ 764백만원 － 보조 764(국비 535) － 융자 0, - 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합 계		■ 농작물 132,078ha ■ 농업시설 136.5ha ■ 농경지 190.6ha ■ 가축폐사 111천수, 양봉 2,586군 ■ 수리시설 170개소 * 피해 농가수: 109,788호	<합계: 234,616백만원> · (중대본): 33,522 － 보조(사유): 33,522(국비 21,634) · (농식품부): 201,094 － 보조(사유): 183,132(국비 128,181) － 보조(공공): 1,982(국고1,332) － 융자: 11,928 / 자부담: 4,052 * 영농자금 상환연기: 40,952

○ 2020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이상저온 (4월)	13개 시·도 과수 개화기, 노지 작물 정식기 저온 피해 * 피해 농가수: 74,204호	■ 농작물 43,554ha * 과수 37,111, 맥류 2,950, 전작 1,820, 채소 1,106, 특 작 445, 기타 122	■ 98,634백만원 - 보조 98,049(국비 68,645) - 융자 351(351) - 자부담 234 * 영농자금 상환연기: 32,385
마늘인편 2차분화 (5월)	겨울철 고온의 영향으로 전남지역 남도종 마늘의 인편 2차분화(벌마늘) 피해 * 피해 농가수: 1,970호	■ 마늘 644ha	■ 1,586백만원 - 보조 1,586(국비 1,110) - 융자·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우박 (5.29.~6.6.)	5.29일 경북, 6.6일 전북·전남·경남 내륙·산간지역 사과, 고추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477호	■ 농작물 1,273ha * 과수 1,020, 채소 211, 전작 26, 특작 16	■ 2,941백만원 - 보조 2,941(국비 2,059) - 융자·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집중호우 (7.28.~ 8.11)	집중호우 영향으로 전국적 농작물 침수, 가축폐사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47,767호	■ 농작물 34,175ha ■ 유실·매몰 2,937ha ■ 시설물 237ha ■ 가축폐사: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꿀벌 26천군 등 ■ 수리시설 958개소	<중대본 심의> ■ 325,532백만원 - 보조(사유) 127,200(국고 85,500)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175,601(국고 92,803) - 융자 (56,677) - 자부담 22,731 * 영농자금 상환연기: 39,987
태풍 ‘바비’ (8.26~8.27)	전남, 제주 중심으로 7개 시도 농작물 낙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4,645호	■ 농작물 8,902ha ■ 유실·매몰 4.6ha ■ 시설물 12ha ■ 가축폐사: 돼지 70, 오리 2,000마리, 꿀벌 211군	■ 9,572백만원 - 보조 9,416(국고 6,592) - 융자 0(429) - 자부담 156
태풍 ‘마이삭’, ‘하이선’ (9.2~.3, 9.6~7)	충청, 전라, 경상 등 전국 16개 시도 농작물 낙과, 도복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41,436호	■ 농작물 115,028ha ■ 유실·매몰 185ha ■ 시설물 177ha ■ 가축폐사: 한우14마리, 돼지1,530, 가금류 11천수, 꿀벌 6천군 등 ■ 수리시설 193개소	<중대본 심의> ■ 140,206백만원 - 보조(사유) 130,900(국고 72,500)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4,573(국고2,426) - 융자 500(11,679) - 자부담 4,233 * 영농자금 상환연기(3개태풍): 21,730
합 계		■ 농작물: 203,576ha ■ 유실매몰: 3,126ha ■ 농림시설: 426ha ■ 가축폐사: 1,930천마리, 꿀벌 32천군 ■ 공공(수리)시설: 1,151개소 * 피해 농가수: 271,499호	<합계: 578,471백만원> · (중대본): 258,100 - 보조(사유): 258,100(국비158,000) · (농식품부): 320,371 - 보조(사유): 111,992(국비78,406) - 보조(공공): 180,174(국비95,229) - 융자: 851(69,136) / 자부담: 27,354 * 영농자금 상환연기: 94,102

□ 해양수산부

○ 2024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고수온	7~9월	전남,경남, 충남,경북, 제주	· 2,275어가, 143,020백만원 · 어류(조피볼락, 말쥐치, 숭어 등) 등 67,585천마리 · 멍게, 굴 등 23천줄	· 계: 95,008백만원 - 보조 42,006(국비 29,379) - 용자 31,400 - 자부담 21,602
빈산소 수괴	7~10월	경남	· 294어가, 7,366백만원 · 굴·홍합 등 8천줄	· 계: 6,675백만원 - 보조 3,464(국비 2,411) - 용자 1,926 - 자부담 1,284
합 계			■ 총 2,569 어가 ■ 어류 등 67,585천마리 ■ 굴·홍합·멍게 등 31천줄	< 합계: 101,683백만원 > - 보조: 45,470(국비 31,790) - 용자: 33,326 - 자부담: 22,886

○ 2023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저수온	1~3월	전남,경남	· 61어가, 4,808백만원 · 어류(돔류, 조기류) 1,925천마리	· 계: 4,044백만원 - 보조 1,769(국비 1,238) - 용자 1,365 - 자부담 910
고수온	7~9월	전남,경남, 경북	· 825어가, 43,829백만원 · 어류(조피볼락, 넙치, 강도다리등) 31,779천마리 · 멍게 2천줄	· 계: 31,142백만원 - 보조 13,956(국비 9,782) - 용자 10,311 - 자부담 6,874
빈산소수괴	7~10월	경남	· 74어가, 1,493백만원 · 굴·홍합 2천줄	· 계: 1,473백만원 - 보조 746(국비 522) - 용자 436 - 자부담 290
합 계			■ 총 960 어가 ■ 어류 33,704천마리 ■ 굴·홍합·멍게 등 4천줄	< 합계: 36,659백만원 > - 보조: 16,471(국비 11,543) - 용자: 12,113 - 자부담: 8,075

○ 2022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이상조류	1~2월	전남	· 653어가, 647백만원 · 김 48천책, 다시마 8천줄	· 계: 631백만원 - 보조 358(국비 250) - 용자 164 - 자부담 110
강풍	3월	전남	· 413어가, 446백만원 · 김 1천책 · 미역·다시마 등 12천줄	· 계: 427백만원 - 보조 209(국비 146) - 용자 164 - 자부담 55
고수온	7~9월	전남	· 64어가, 956백만원 · 조피볼락 851천마리	· 계: 891백만원 - 보조 453(국비 317) - 용자 263 - 자부담 175
합 계			■ 총 1,130 어가 ■ 어류 851천마리 ■ 다시마·미역 등 20천줄 ■ 김 58천책	< 합계: 35,980백만원 > - 보조: 17,553(국비 12,227) - 용자: 11,028 - 자부담: 7,399

○ 2021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팽생이 모자반	1~4월	전남	· 623어가, 1,969백만원 · 김 99,237책, 다시마 9,829줄	· 계: 2,047백만원 - 보조 1,075(국비 753) - 용자 583 - 자부담 389
고수온	7~8월	경남, 전남	· 3,961어가, 34,235ha, 29,232백만원 · 어류(조피볼락·참돔·갈치·농민들 등) 전복 17,970천마리 · 멍게·굴·가리비·미역 등 802줄 · 새고막 1,813톤	· 계: 25,027백만원 - 보조 12,027(국비 8,366) - 용자 7,768 - 자부담 5,231
이상조류 (빈산소영양염류)	9~12월	경남	· 537어가, 9,644백만원 · 굴 11천줄	· 계: 8,905백만원 - 보조 4,450(국비 3,108) - 용자 7,768 - 자부담 5,231
합 계			■ 총 397어가 ■ 어류·전복 17,970 천마리 ■ 굴·멍게·다시마·미역·가리비 등 22천줄 ■ 새고막 1,813톤	< 합계: 35,980백만원 > - 보조: 17,553(국비 12,227) - 용자: 11,028 - 자부담: 7,399

○ 2020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강풍, 풍랑	6월	전남	· 21어가, 584백만원 · 전복 493천마리, 가두리 667칸, 관리선 6척 등	· 계: 373백만원 - 보조 170(국비 119) - 용자 146 - 자부담 58
빈산소수괴	7~8월	경남	· 271어가, 379ha, 5,549백만원 · 굴·홍합·미더덕·멍게 70천줄	· 계: 5,236백만원 - 보조 2,676(국비 1,858) - 용자 1,548 - 자부담 1,032
태풍	8월	전남	· 79어가, 1,369ha, 1,671백만원 · 어류·전복 1,697천마리 · 다시마·굴 등 841줄 · 가두리 5,128칸 등 시설	· 계: 922백만원 - 보조 437(국비 306) - 용자 329 - 자부담 156
저염분	8~9월	경남	· 26어가, 12ha, 597백만원 · 숭어 237천마리	· 계: 165백만원 - 보조 85(국비 59) - 용자 48 - 자부담 32
합 계			■ 총 397어가 ■ 어류·전복 2,427 천마리 ■ 굴·홍합·미더덕·멍게·다시마 등 71천줄 ■ 가두리 5,795칸 ■ 가두리 관리선 6척 등 시설	< 합계: 6,717백만원 > - 보조: 3,367(국비 2,342) - 용자: 2,072 - 자부담: 1,278